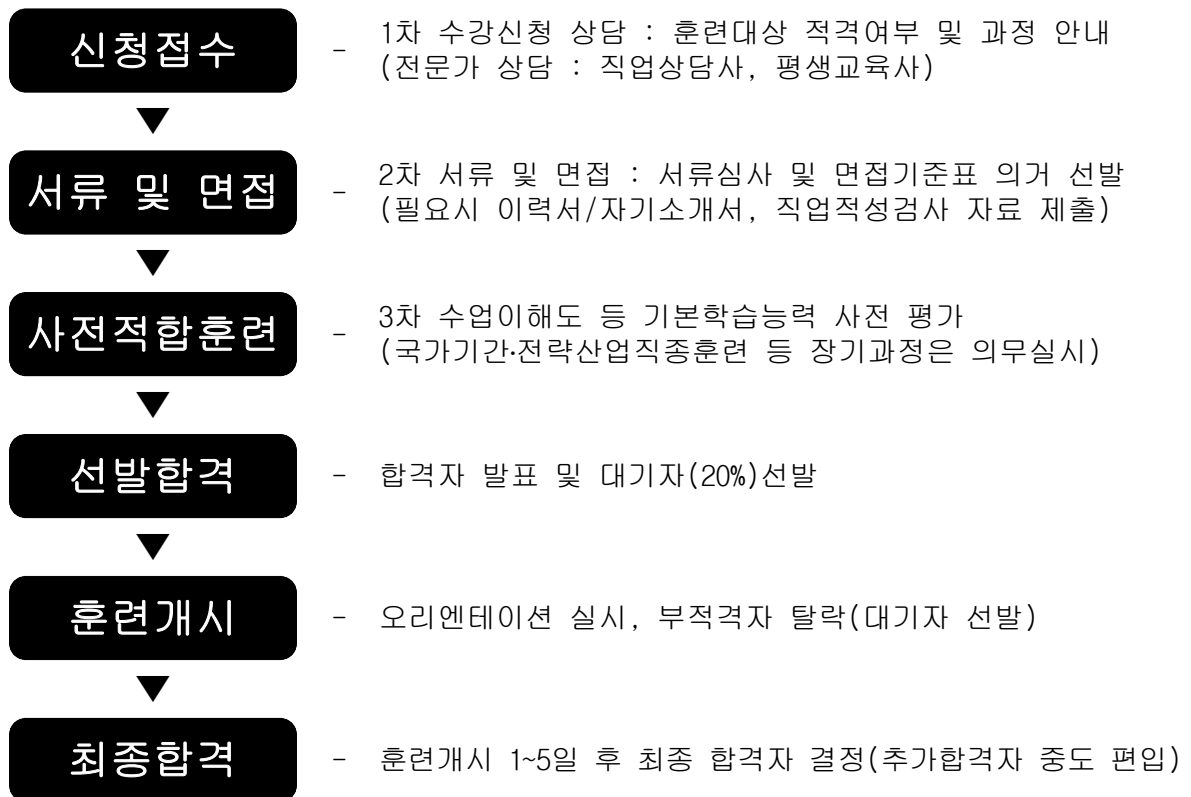


훈련생 모집 및 선발기준

■ 훈련대상

- 직무능력향상 및 구직등록 후 취업·창업목적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 받은 자
- 고용노동부 지방노동관서 훈련 상담을 통해 훈련필요성이 인정된 자

■ 선발절차



※ 모집정원 미달시 1차 전문가 상담(직업상담사, 평생교육사) 및 서류심사로 선발 가능

■ 선발기준

- 1차. 소양평가 (직무능력향상 목적 및 취업의지 등 평가, 직업상담사 등 전문가 상담)
- 2차. 서류 및 면접 (면접기준표 60점 이상)
 - 지원동기, 성실성, 적극성
 - 장래희망 및 과정에 대한 열의
 - 실기수행 기본능력(신체·정신 장애여부)
- 3차. 사전적합훈련(서류 및 면접 평가 후 필요시 진행, 국가기간훈련 의무실시)
 - 수업이해도 등 기본학습능력 사전 평가(60점 이상)

■ 선발제외

- 가.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훈련대상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자
- 나. 지적장애 또는 귀금속분야 특성상 기술습득이 어려운 신체장애자
- 다. 동일·유사 과정 재수강 대상자
- 라. 중도탈락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
- 마. 범법으로 인해 수배중인 자
- 바. 타인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성격 및 언어사용자
- 사. 귀금속분야 특성상 기술습득이 어려운 고령자 또는 직업능력개발 목적이 아닌 자 및 기타 훈련생으로 적합하지 않은 자
- 아. 훈련과정의 담당 교·강사가 안전사고 위험 등 훈련대상자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선발제외 가능.

※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제외 대상 (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조제2항)

- ① 「공무원연금법」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및 「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」을 적용받고 현재 재직 중인 사람
 - ①-2 「군인연금법」 제2조를 적용받고 현재 재직중인 사람(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3조 적용자 제외)
- ② 만 75세 이상인 사람
- ③ 「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」을 적용받는 외국인(단,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3조의3제1호를 적용받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등은 카드발급 가능)
- ④ 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지원·용자·수강 제한의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
- ⑤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56조제4항에 따라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반환 명령을 받고 그 납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람
- ⑥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훈련비를 지원받는 훈련(또는 사업)에 참여하는 사람(사업주훈련 제외)
- ⑦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9조에 따라 생계급여를 수급받는 사람(단, 같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조건부수급자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조건 부과를 유예받은 사람은 카드발급 가능)
- ⑧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(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인 사람 제외)
 - ⑧-2 대학(원) 재학생 중 졸업까지의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여 남은 사람(단, 원격대학의 재학생은 제외)
- ⑨ 월평균 임금(소득) 300만 원 이상인 대규모기업근로자(만 45세 미만)·특수형태근로종사자
- ⑩ 사업기간 1년 미만이거나 연 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인 자영업자(사업자등록증이 여러 개일 경우 합산한 금액임)
- ⑪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 간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법인의 대표자
- ⑫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단체의 대표자로 최근 1년간의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사람
- ⑬ 기타 직업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(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신청서 등 검토 후 결정)